

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

□ 제정 : 2017.01.0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‘본교’ 라 한다) 구성원이 운영하는 각종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구성원” 은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을 말한다.
- ② “안전관리” 라 함은 교내·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반 사항으로 신체적, 정신적 피해(인권침해피해를 포함한다)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구성원이 교내·외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및 행사(이하 ‘행사’ 라 한다) 운영 시 적용 한다.

- 제4조(관리의 책임과 의무) ① 교내·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 하되, 안전 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학기 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- ② 교내·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학생지원처와 학생회에서 협의하여 진행한다.
 - ③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중요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.

제5조(안전관리 대상자의 의무) 교내·외에서 진행되는 행사 등을 주관 또는 참여하는 학생은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행사신고서를 작성하여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- ② 학생지원처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한다.
- ③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미 승인된 행사에 대해서는 사고 시 관련 학생이 형·민사 책임을 진다.

제6조(행사의 승인)①제5조 제 1항에 정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책임자로 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장에게 행사일 3일전까지 승인을 요청하도록 한다.

1. 학장
 2. 학부(과)장
 3. 관련 지도교수
 4. 학생회장
- ② 제1항에 정한 책임자는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며, 사고 발생 시 관련 징계 및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 할 수 있다.

제7조(안전관리 수칙 준수사항) ① 교외에서 진행되는 행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

다.

1. 숙박시설(장소)에 관한 사항
2.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
3.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
4. 행사(계약) 전 답사
5.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
6. 지도교수 참석과 필요시 교직원 동행
7. 예산 집행 내역 공개

② 교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학생의 수업방해 및 심리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직원의 안전한 근무 분위기 조성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지 않는 장소로 하여야 한다.
2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또는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.
3. 학교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.

제8조(조치)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.

- ① 안전을 위해 시설물 이용 제한 및 통제
- ② 교내에서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요소에 대한 통제
- ③ 기타 구성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으로 종전의 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은 시행된 것으로 본다.